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허정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0
----------	-------

발의년월일 : 2015. 5. .

발 의 자 : 허정행,백남환,이동주,
이봉수,이필레,전승학,
차재홍 (7명)

1. 제안이유

「도로교통법」 제12조 등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다. 보육시설,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라.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교육 및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필요

※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가. 소요예산 :

나. 산출기준 :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필요

나. 예산조치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 필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을 말한다.
5.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시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지도) 구청장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초등학교 등의 장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제6조, 제8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